

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7. 9. 19.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7. 9. 26.

라. 상정 및 의결 : 제5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(97. 9. 26.) 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김석준)

가. 제안이유

- 공원관리사업소가 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사업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개정

나. 주요골자

- 소재지 변경(안 제2조)
 - 현행 : 부천시 원미구 중동 607-1번지
 - 개정 :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4. 토론요지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8. 체계적인 심사내용

- 없음

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05호
의결년월일	97. 9. 30. (제55회)

제출년월일:97. 9. 19.

제 출 자: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공원관리사업소가 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사업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 개정

□ 주요골자

- 소재지 변경(안 제2조)
 - 현행 : 부천시 원미구 중동 607-1번지
 - 개정 :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

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치) 사업소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에 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치) 사업소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607-1번지에 둔다.	제2조(위치) 사업소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에 둔다.